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0. 21.

운영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2020년 10월 8일

나. 발 의 자: 유승용 의원 외 4명

다. 회부일자: 2020년 10월 13일

라. 상정일자: 제22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2020. 10. 19.)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유승용 의원)

가. 제안이유

- 영등포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집행 및 사용제한 규정을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에 대해 정함(안 제5조 ~ 제6조)

- 교육 및 점검에 대한 사항(안 제7조)
-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정함(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언론·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불신을 해소시키고,
- 맑고 투명한 의회상 확립 및 의회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총 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인 업무추진비의 사용 및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높이고,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시대적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259호
----------	-------

발의년월일: 2020년 10월 일

발의자: 유승용 의원 외 4명

1. 제안이유

영등포구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나. 집행 및 사용제한 규정을 정함 (안 제3조 및 제4조)
- 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에 대해 정함 (안 제5조 ~ 제6조)
- 라. 교육 및 점검에 대한 사항 (안 제7조)
- 마.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정함 (안 제8조)

3. 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 가. 관련 법령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영등포구의회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영등포구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영등포구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제한) 업무추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계없는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없는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각종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유흥·퇴폐·향락·사행 업소 등에서의 사용

8.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제5조(사용내역 공개) ① 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 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분기 1회 이상 영등포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영등포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8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게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